

의안 번호	2483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7.(목)

2. 제안이유

-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확대 및 인용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4조 제2호)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적 지원 (안 제5조제2항)

4.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 확대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제2항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임.

- 현행 조례의 설치 권장 시설 항목이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설치 의무대상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지원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큰 거 법 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